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.

발 의 자 : 구자근 · 이상휘 · 박성민
김선교 · 최수진 · 김승수
정점식 · 정동만 · 김성원
강명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·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의안번호 제1807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 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223	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	사용료등의 감면	2035. 12. 31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